

제7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7.1조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이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을 정도로 절대적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 나.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 1)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일자에 발효 중인 그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그리고
 - 2) 제2.4조(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라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 관세율

제7.2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검토하고 그 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실행 가능한 한 최대한 조기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에 따라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2조다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2조가호 및 제4.2조나호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어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그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및 기간 동안을 제외하고
- 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6.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대상이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그러한 조치가 전에 적용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재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적용기간은 최소 2년이어야 한다.

7.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때,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포함된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7.3조 잠정 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 판정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으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3. 모든 잠정 조치의 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적용 당사국은 제7.2조제2항 및 제7.2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4. 적용 당사국은 후속 조사에서 수입의 증가가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었다는 판정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7.2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조치의 존속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7.4조 보상

1.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 효과를 가지거나 그 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협의 개시 후 3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보상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무역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수출 당사국은 양허의 적용을 정지하기 최소 30일 전까지 적용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수출 당사국의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행하여져 왔고 그러한 조치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 한, 그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년간 행사되지 아니한다.

제7.5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한쪽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 판정 및 최종 판정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임시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할 수 있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 가. 양자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조치

제7.6조 정의

제1절의 목적상,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의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7.1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히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이 협정의 발효 후 10년 간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의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표가 그 당사국이 그 상품에 대한 관세를 10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쳐 철폐하도록 규정하는 상품에 대해서는, 과도기간은 그 양허표에 규정된 그 상품의 관세 철폐 기간을 말한다.

제2절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제7.7조 일반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여 사용되어야 하고,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에 관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체계에 근거하여야 할 것이라는 데 합의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양 당사국은 최종 판정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고 답변한다.
3. 양 당사국은 반덤핑협정에 따라 어떠한 조치도 자의적이거나 보호주의적인 방식으로 취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반덤핑 절차에서 덤핑 마진을 결정할 때, 정상 가격과 수출가격 결정에 있어서의 대체 가격 또는 대체 비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제3국의 대체 값에 근거한 방식을 사용하는 관행이 양 당사국 간에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한다.
5. 양 당사국은 덤핑 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 또는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설정되는 경우, 양의 값이든 음의 값이든 모든 개별 마진을 평균 계산에 포함시키는 양국의 현재 관행을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양국의 기대를 공유한다.¹

제7.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 7일 내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할

¹ 이는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규범 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수 있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관세 신청을 접수한 후, 그리고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가능한 한 조속히 서면통보를 제공하고, 조사 개시 전 양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7.9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그러한 약속을 제의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게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야기된 피해에 관한 긍정적인 예비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상계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자국의 법과 절차에 합치되게,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회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7.10조 실사

1. 실사 대상 정보의 일반적인 성격 및 제공될 필요가 있는 정보는 현지 실사 전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통보되어야 할 것이다.

2. 실사의 결과는 실사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사의 대상이 되는 관련 수출자 및 생산자에게 공개된다.

제7.11조 공청회

각 당사국은 이해당사자들의 서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또는 자체 발의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적절히 고려한다.

제7.12조 재심에 의한 종료 후 조사

양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인면서 재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개시를 위한 신청에 대하여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7.13조 누적적 평가

2개국 이상으로부터의 수입이 동시에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의 대상이 될 때,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수입 상품 간 경쟁 조건 및 수입 상품과 동종의 국내 상품 간 경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한지를 주의를 가지고 검토한다.

제7.14조 신규 공급자 재심에 적용 가능한 미소기준

반덤핑협정 제9.5조에 따른 개별 마진을 결정할 때, 덤핑 마진이 반덤핑협정 제5.8조에 규정된 미소기준치 미만이라고 판정되면, 수출 당사국 내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7.15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이행을 감독하고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무역구제 조치를 담당하는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된다.
2. 위원회는 통상 매년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더 자주 회합할 수 있다.